

『즐거운우리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 규정(2025.02.17)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즐거운우리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열람 가능 사유) 『즐거운우리집』에 설치하는 CCTV는 어르신의 안전,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 어르신과 직원의 안전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1. 어르신의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지도 자료의 확보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시설 내 외부인 침입에 의한 사고 발생의 예방
4.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2 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 (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 관리 책임자
 - 가. 책임자 : 『즐거운우리집』 대표자(시설장)
 - 나. 운영(담당)자 : 사무국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즐거운우리집』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① 『즐거운우리집』 CCTV는 총 5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번호	내역	수량	설치장소
1	지하	3	엘리베이터 입구, 조리실, 식당
2	외부현관문	3	본관, 별관 출입구, 본관 방풍실 현관
3	1층	7	EV입구, EV내부,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출근부, 사무실, 원장실
4	본관 2~4층	9	EV입구, 거실, 간호사실
5	별관 1~3층	4	별관 1층 3대(에어컨 위, EV입구, EV내부), (에어컨 위) 1대
6	생활실	24	각 1대씩
합계		50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 제1과 같은 안내판을 CCTV 설치장소에 부착한다.
- ③ 다음 각호의 CCTV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과 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1) CCTV 운영모니터
 - 2)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1,920×1,080(200만 화소)
2. CCTV 촬영 시간 : 24시간 촬영,
3. CCTV 정보 보유기간 : 60일(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4. 영상정보 열람장소 : 저장장치 또는 기기는 1층 사무실 및 원장실에 있는 녹화기(DVR)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 (CCTV 운영자의 금지행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하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감시카메라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화면 제공을 제한함.
4.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점검
5.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

제9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화상정보의 이용 시 제출서류 및 제공처리 제한)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4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5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정정(삭제)조치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이 지침서의 사항은 직원들의 동의서를 구하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책임자는 『즐거운우리집』의 열람관련 내부의 내용을 정보주체권자에게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한다.

위 『즐거운우리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지침은 2019년 10월 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즐거운우리집』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한다.

공고일자 : 2025년 2월 24일 / 변경 실행일자 : 2025년 2월 17일